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04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200 재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6. 7. 6.
판 결 선 고	2016. 8. 2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4. 12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,897,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라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04

가. 1) 피고는 2011. 9. 3. 원고에게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면 [redacted]리 289, 289-1, 289-2, 289-3, 306 각 토지에 관한 2011년도분 재산세 1,473,730원, 지방교육세 294,740원 합계 1,768,470원을 부과하였다.

2) 원고가 납기일(2011. 9. 30.)까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, 피고는 2011. 11. 23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고, 원고가 계속하여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후 수차례 반복하여 납부독촉을 하다가, 최종적으로 2014. 12. 13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.

나. 1) 피고는 2012. 9. 5.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89, 289-1, 289-2, 289-3, 306 각 토지에 관한 2012년도분 재산세 1,446,680원, 지방교육세 289,330원 합계 1,736,010원을 부과하였다.

2) 원고가 납기일(2012. 9. 30.)까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, 피고는 2012. 10. 17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고, 원고가 계속하여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후 수차례 반복하여 납부독촉을 하다가, 최종적으로 2014. 12. 13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.

다. 1) 피고는 2013. 9. 3. 원고에게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면 [redacted]리 289, 289-1, 289-2, 289-3, 306 각 토지에 관한 2013년도분 재산세 1,868,960원, 지방교육세 373,790원 합계 2,242,750원을 부과하였다.

2) 원고가 납기일(2013. 9. 30.)까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, 피고는 2013. 10. 4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고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04

원고가 계속하여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후 수차례 반복하여 납부독촉을 하다가, 최종적으로 2014. 12. 13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.

라. 1) 피고는 2014. 9. 1. 원고에게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면 [redacted]리 289, 289-3, 306 각 토지에 관한 2014년도분 재산세 1,173,500원, 지방교육세 234,700원 합계 1,408,200원을 부과하였다.

2) 원고가 납기일(2014. 9. 30.)까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, 피고는 2014. 10. 14.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고, 원고가 계속하여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후 2014. 11. 8. 및 2014. 12. 13.에도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(이하 위 가. 내지 라.의 각 2014. 12. 13.자 납부독촉을 '이 사건 납부독촉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2014. 12. 31. 피고에게 위 가. 내지 라.의 각 재산세, 지방교육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8,898,02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4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면 [redacted]리 289, 289-1, 289-2, 289-3, 306 각 토지를 [redacted]기도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바,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, 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04

고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을 모두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가.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

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(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), 앞의 1.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독촉은 피고가 앞의 1. 가. 내지 라.의 각 1)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· 고지하고 이후 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을 수차례 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,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[다만 이 사건 납부독촉 중 추가로 납부고지된 중가산금 부분의 경우 항고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, 중가산금은 세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,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(대법원 2000. 9. 22.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),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인바(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521 판결 등 참조),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, 즉 '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04

부과한 것은 위법하다'는 것은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본세의 내용상 하자에 관한 주장으로서 중가산금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,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].

따라서 이 부분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납부독촉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나. 이 사건 소 중 납부한 세액 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

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(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잘못 부과한 재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바, 이는 본래의 항고소송, 즉 피고에 대한 위 가. 기재 취소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서 관련청구소송인바, 위 가.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, 위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복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04

판사 김선영

판사 홍영진